

의안번호	2213769
의 퇴 인	김용태의원
회 답 일	2026.1.13.
추계번호	25B5796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2(할당계획의 평가 등) 신설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,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35조(금융상·세제상의 지원 등)	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, 온실가스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 개발투자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·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7조의2(할당계획의 평가 등) 신설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5조(금융상·세제상의 지원 등)		

2. 상세 사유

□ 할당계획의 평가(안 제7조의2)

-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,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

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,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할당계획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또는 평가자문단 또는 전문평가기관 운영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참고로,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·거래·제출 등에 관한 분석을 매년 수행하고 있음

[표 1] 연구용역 관련 주요내용

사업명	수행기관	수행기간	계약금액 (만원)	주요내용
배출권거래제 환경·경제적 영향분석 및 연구	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	2025. 5.~12.	9,800	·배출권거래제의 환경·경제적 영향 분석 ·전환부문 유사할당 상향의 영향 분석 ·에너지 가격, 전력 원단위 등에 따른 업종 별 민감도 분석 ·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기업별 제도 대응현황 파악 및 시사점 제시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할당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의 절차·방법과 평가자문단의 설치 또는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개정안은 해당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평가자문단 및 전문평가기관의 설치·지정 여부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□ 금융상·세제상의 지원(안 제35조)

-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,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 사업에 대하여 금융상·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이에 따라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참고로, 정부는 현행법 제35조¹⁾에 따라 농식품 및 목재업종 분야의 배출권거래제

1) 제35조(금융상·세제상의 지원 등)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·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할당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」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
[표 2] 「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」 사업 관련 주요내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 (코드명)	내역사업	주요내용	2026 예산
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(6433-400)	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사업	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(농식품 및 목재업종에 한함)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,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등 지원	1,909
	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	온실가스 배출 비규제 대상인 농업인 및 임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, 감축량 인증 및 배출권시장을 통한 감축량 거래 지원	1,919
	농식품기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	법정기준의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(농식품 및 목재업종에 한함)를 대상으로 감축목표 설정·이행점검 및 감축수단 발굴·설비지원 등으로 감축활동을 유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	1,233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온실가스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상·세제상 지원의 내용 또는 보조금 지급의 대상·범위 및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현시점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,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.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